



ISSUE PAPER

『2010년 22호 ‘주간 심층이슈’』



『일본 모바일콘텐츠 심의체계 현황』

○ 작성 취지

- 일본 모바일콘텐츠 증가에 따른 관련 심의기관 및 체계 현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일본모바일콘텐츠 심의 체계 이해 도모
 - 관련기관인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EMA)에 대한 기관 정보 안내
 - 국내 모바일콘텐츠 진흥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국내 모바일콘텐츠 일본진출시 참고자료로 활용
- ※ 출처 : EMA 홈페이지(www.ema.or.jp) 및 보도자료

○ 작성 순서

1. 「모바일콘텐츠 심의기관 개요」
 -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EMA)
2. 「심의관련 실행 사업 현황」
 - 모바일사이트의 심사, 인증 및 운용감시업무, 필터링 개선, 계몽·교육 활동 등
3. 「시사점」

1. 『모바일콘텐츠 심의기관 개요』

□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EMA)」

○ 설립 목적

-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주체성을 확보하면서 위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모바일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행

○ **설립 배경**

- 모바일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생활상의 주요 인프라로 구성되어 가는 가운데, 청소년이 위법유해정보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청소년관련 범죄발생 방지를 위한 업계 대책방안 시스템 구축 필요
- 상기 청소년 범죄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동통신사의 일률적인 ‘유해사이트 액세스제한 서비스(필터링서비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콘텐츠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재평가 및 필터링서비스의 개선책 필요
- 또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터링서비스 이외에 청소년 스스로 지식·정보를 선별하고,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을 위해 가치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몽·교육프로그램과 등급 등의 시책또한 중량적으로 실시 필요

< 표1 > (사)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EMA) 개요

구분	내 용
기 관 명	일반사단법인 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국문) Content Evalu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EMA)(영문)
설 립 일	2008년 4월 8일
대표이사	호리베 마사오(堀部政男) (법학자(정보법학))
사무국장	우에누마 시노(上沼紫野) (변호사)
주 소	3F, Chitose B/D, 1-4-38, Nishi-Azabu, Minato-ku, Tokyo 106-0031, JAPAN
연 락 처	(전화)03-6913-9235 (팩스)03-5775-3885
회원사수	83개사(정회원 73사, 찬조회원 10사)
사업내용	- 모바일사이트 심사, 인증 및 운용감시업무 - 청소년보호와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한 필터링 개선 - ICT(정보통신기술) 능력의 계몽·교육 활동
U R L	www.ema.or.jp

○ **주요 연혁**

- ‘07년 12월 25일, ‘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가칭) 준비위원회 발족
- ‘08년 4월 8일, EMA 설립발기인과 법인설립 발표
- ‘08년 6월 30일, 「커뮤니티사이트 운용 관리체제 인증기준」 발표
- ‘08년 9월 12일, 이동통신사 필터링 방식(블랙리스트 방식)에 의해 제외되었던

사이트 중 EMA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열람가능케 하는 서비스 실시

☞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간 건전한 발전과 국민 편리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는 (사)전기통신사업자협회(TCA)가 있음

○ 주요 회원사

- 정회원(73개사)

· (주)인덱스, 인포콤(주), NHN Japan(주), NTT솔마레(주), KLab(주), GREE(주), (주)사이버드, (주)사미네트웍스, (주)SEGA, (주)세르시스, DNP(주), (주)DeNA, (주)드왕고, (주)파피루스, (주)마법의i랜드, (주)믹시, (주)모바일.jp, 락텐(주) 등 모바일콘텐츠, 전자북, 모바일게임, 모바일음원, 모바일커머스, SNS 업체

- 창조회원(10개사)

· NPO법인 인터넷스킬인정보급협회, (사)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텔레콤서비스협회, NPO법인 기업교육연구회, (사)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 (사)일본음악사업자협회,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실연가저작권접권센터, (사)일본통신판매협회, (사)일본레코드협회 등 관련단체

2. 『심의관련 실행 사업 현황』

□ 인증제도

○ 인증제도에는 ①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증제도 ② 유저투고 전 항목 감시형 신청플랜 ③ 사이트 표현 운영관리체제 인증제도 등 총 3가지 유형의 제도 및 플랜을 운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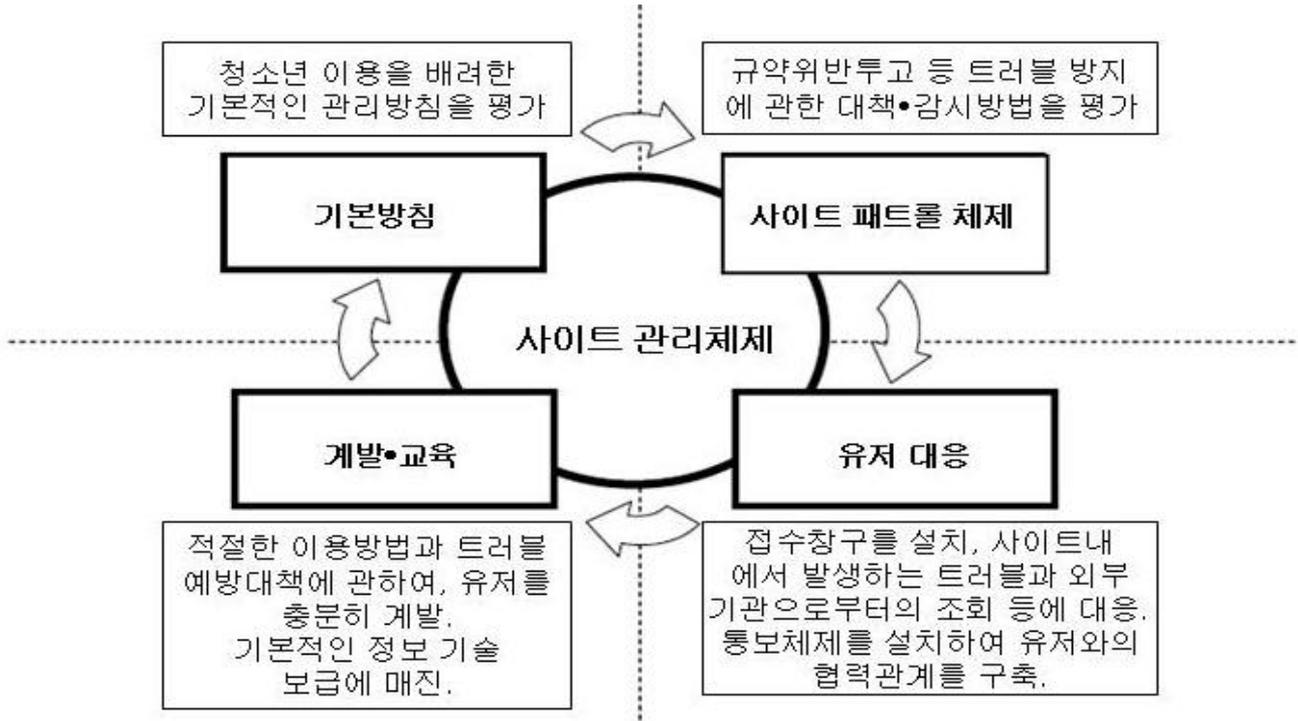
○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증제도

- 유저 투고 등에 의한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모바일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로 사이트가 건전한 이용환경이 정비·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MA가 정한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증기준' 및 심사·운용감시에 관한 제사항을 정한 '심사·운용감시세칙'에 따라 심사·인증·운용감시를 실시
- 심사결과, '커뮤니티사이트 운영관리체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증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정기적·지속적인

운영감시를 실시

-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4분야 22건의 요구항목으로 구성, 이 항목에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인증 부여

< 그림1 > 인증기준 구성도



< 표2 > (사)커뮤니티사이트 운영관리체제 요구항목리스트

분야		요구항목
1	기본항목	이용자 규약의 존재 및 동의
2		건전화를 위한 운용방침 명시
3		사이트 운용관리체제에 관한 전문의사 결정기관의 설치
4		청소년 이용을 전제로 한 이용환경의 정비
5		청소년 이용을 배려한 투고대응 기준
6		청소년 이용을 배려한 광고 게재 기준
7	사이트패트롤 체제	투고 로그의 존재
8		열람·시스템 추출 등에 의한 사이트패트롤(감시 문의·통보대응) 실시
9		사이트패트롤(감시, 문의·통보대응) 체제에서의 사이트패트롤 요원 규모
10		사이트패트롤 체제에서의 관리자 배치 비율
11		긴급을 요하는 투고로의 대응
12		사이트패트롤 요원 교육연수 및 노하우 공유제도 실시
13	유저대응	문의대응 창구 설치
14		통보제도 등 설치
15		문의·통보대응 프로세스
16		유저정보 관리
17		유저연령 관리
18		강제퇴출 처분 및 투고금지 처치 실시
19	주의 경고 대응·패널티제도 실시	
20	계발·교육	주의환기와 금지사항 정비
21		FAQ 등의 정비
22		계발·교육 콘텐츠의 설치

- 이에 따른 비용은 **요금랭크**에 따라 회원 및 비회원 요금 제시
- ☞ 모든 인증 및 플랜에 관한 **요금제도는 랭크를 정해 실시**

(요금랭크)

회원수 \ 투고수	10만 미만	10만~300만 미만	300만 이상
50만 이상	C	B	A
10만~50만 미만	D	C	B
1만~10만 미만	E	D	C
1만 미만	F	E	D

(신청관련 비용)

- ☞ 예비 심사요금 : (일률) 52,500엔
- ☞ 본 심사요금

요금랭크	본 심사요금(일반)	본 심사요금(EMA회원)
A	2,268,000엔	2,041,200엔
B	1,449,000엔	1,304,100엔
C	1,039,000엔	935,550엔
D	771,750엔	694,575엔
E	525,000엔	472,500엔
F	315,000엔	283,500엔

☞ 운용감시요금

요금랭크	운용감시요금
A	1,512,000엔
B	966,000엔
C	693,000엔
D	441,000엔
E	315,000엔
F	210,000엔

○ 유저투고 전 항목 감시형 신청플랜

-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증제도 ‘유저투고 전 항목 감시형 신청 플랜’은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증기준’에 의거, 유저들의 모든 투고를 엄밀하고 단일 방법으로 유인열람 및 감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플랜
- 투고수와 회원수의 증감에 상관없이 운영방침으로서 전 항목 감시를 계속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플랜
- 이에 따른 비용은 요금랭크에 따라 회원 및 비회원 요금 제시

(신청관련 비용)

☞ 예비 심사요금 : (일률) 52,500엔

☞ 본 심사요금

요금랭크	본 심사요금(일반)	본 심사요금(EMA회원)
A2	사이트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별도 책정 실시	
B2		
C2		
D2	694,575엔	625,118엔
E2	472,500엔	425,250엔
F2	283,500엔	255,150엔

☞ 운용감시요금

요금랭크	운용감시요금
A2	사이트 상황에 따라 할인율을 별도 책정 실시
B2	
C2	
D2	330,750엔
E2	236,250엔
F2	157,500엔

○ 사이트 표현 운용관리체제 인증제도

- ‘사이트 표현 운용관리체제 인증제도’는 텍스트에 의한 표현 및 문장표현, 사진, 동영상, 디지털만화, 디지털북 등의 전자서적류, 게임 등을 발신(판매 등)하는 모바일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
- 사이트내 혼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콘텐츠)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체제가 정비되어 청소년 열람에 배려한 구분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휴대폰용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MA가 정한 ‘사이트 표현 운용관리체제 인증기준’ 및 심사·운용감시에 관한 제사항을 정한 ‘심사·운용감시세칙’에 따라 심사·인증·운용감시를 실시
- 이에 따른 비용은 요금 산출표에 따라 회원 및 비회원 요금 제시

(요금 산출표)

☞ A표(기준 콘텐츠수 산출계산식)

표현구분	계산식	해당하는 표현방법
타입A	타입A의 콘텐츠 총수×0.2	페이지타입 콘텐츠, 벽지, 묘사 (복수페이지파일이 아님)
타입B	타입B의 콘텐츠 총수×1	만화, 사진집, 일러스트집
타입C	타입C의 콘텐츠 총수×1.5	동영상
타입D	타입D의 콘텐츠 총수×2	소설, 게임
EMA 인증대상범위내에서 복수의 표현방법이 있으며, 복수의 표현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산식에 따라 정리한 각 표현구분의 기준콘텐츠수의 합계가 됨		

☞ B표(기준 콘텐츠수 산출계산식)

랭크	기준 콘텐츠수
1	1 ~ 500
2	501 ~ 1,000
3	1,001 ~ 5,000
4	5,001 ~ 10,000
5	10,001 ~ 20,000
6	20,001 ~ 30,000
7	30,001 ~ 40,000
8	40,001 ~ 50,000

※ 기준 콘텐츠수가 50,001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 랭크 기준 책정

☞ C표(랭크별 종량심사료, 종량감시료)

랭크	종량심사료	종량감시료
1	47,250엔	59,063엔
2	94,500엔	70,875엔
3	189,000엔	118,125엔
4	283,500엔	163,375엔
5	378,000엔	235,200엔
6	472,500엔	305,025엔
7	567,000엔	398,475엔
8	661,500엔	491,925엔
9	랭크 9이상(기준 콘텐츠수가 50,001 이상)의 경우는 별도 책정	

(신청관련 비용)

☞ ①예비 심사요금 : (일률) 52,500엔

☞ 본 심사요금

항목	본 심사요금(일반)	본 심사요금(EMA회원)
②기본심사료	210,000엔	189,000엔
③종량심사료	A표 계산식으로 '기준 콘텐츠수'를 산출, B표에서 '랭크'을 확인후, C표의 '종량심사료'를 참조	
계	②기본심사료 + ③종량심사료	

☞ 운용감시요금

항목	요금
④기본심사료	189,000엔
⑤종량심사료	A표 계산식으로 '기준 콘텐츠수'를 산출, B표에서 '랭크'을 확인후, C표의 '종량심사료'를 참조
계	④기본심사료 + ⑤종량심사료

☞ 추가 운용감시요금

※ 추가 운용감시요금은 추가 운용검사신청 결과, 랭크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지불

항목	요금
⑥기본심사료	189,000엔
⑦종량심사료	(변경후 랭크 종량감시료 - 변경전 랭크 종량감시료) × (인증기간 잔월수 ÷ 12)
계	⑥추가 운용감시요금A + ⑦추가 운용감시요금B

□ 계몽·교육 프로그램

- 계몽·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자, 지역사람들에게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인터넷 길라잡이'를 발표, ①입문편, ②커뮤니티편, ③저작권편을 발표, 관련 단속기관 및 단체 등도 링크하여 안내

(입문편)

- ✓ 휴대폰 인터넷 이용에 관한 기본 룰을 마스터
- ✓ 보호자를 이해 도모를 위해 관련 해설 추가 및 매너 및 룰을 설명하는 비디오형식의 콘텐츠도 홈페이지내에서 제공
- ✓ 주요목차
 - 휴대폰 인터넷이란?
 - 정보발신자로서 알아두고 싶은 것
 - 휴대폰 이용을 위한 룰 만들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확인 · 이해해야 할 것
- 불안을 느낄때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상담창구로

(커뮤니티편)

- ✓ 프로필, 블로그, 일기, 게시판, SNS 등 커뮤니티사이트가 가진 기능과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 ✓ 주요목차
 - 커뮤니티사이트란?
 - 커뮤니티사이트의 종류
 -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주의해야할 점
 - 휴대폰 인터넷도 PC 인터넷과 동일!
 - 전문상담창구 · 통보창구 안내

(저작권편)

- ✓ 왜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하여 설명
- ✓ 주요목차
 - 저작권이란?
 - 왜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지?
 - 이런 점도 저작권침해?
 - 작품의 창작자 · 정보발신자로서(도용과 인용)
 -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 맏음말(권리를 지켜 풍요로운 사회로)
 - 보충자료

3. 『시사점』

- 상기 (사)모바일콘텐츠심사 · 운용감시기구(EMA)는 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업계 차원에서 조기에 해결하고자 업계와 법학자 중심으로 해당기구를 설립해 인프라 구축에 비해 뒤떨어진 모바일콘텐츠의 건전한 발전과 청소년보호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가 실시하는 '필터링서비스'는 해당 키워드에 의해 강제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량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회사들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해결방안이 모바일콘텐츠업체의 단순한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서비스에 의해 일률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우량 모바일사이트에 대해 건전성을 입증,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필터링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건전한 청소년 모바일콘텐츠 이용 문화에 대하여 계몽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정부에 대하여 정책수립에 대한 제언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며, 업체간 기본 룰을 정하여 자사 콘텐츠 보호를 위한 방안은 비단 모바일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관련 단체들에게 필요한 활동기준이 되는바, 한국에서 관련 규정 및 정책방안 수립시 **관련단체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콘텐츠 진흥 및 청소년, 저작권 보호장치 병행 필요**